

#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조례의 별표 시설목록에 코아루센타시아 내 기부채납 시설인 문화및집회시설을 추가하고 그 밖의 문화예술시설의 명칭을 현행화 하고자 하며, 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준하도록 규정 함

## 3. 주요내용

가. 문화예술시설 목록 추가 및 명칭·도로명 주소 현행화를 위한 별표 1·2 개정

- 1) 성북전시관 → 성북예술창작센터, 아리랑아트홀 → 미아리예술극장
- 2) 시설 목록 추가 : 코아루센타시아 내 문화시설

나.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시설의 위탁운영 시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준용 규정 신설(안 제6조제3항)

## 4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나. 합 의 : 해당없음

다. 기 타

- 1) 입법예고: 2015. 4. ~ 5.
- 2) 비용추계 등 자료 :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 별첨
- 3) 부패영향평가 결과 :
- 4) 인권영향평가 결과 :
- 5) 성별영향평가 결과 :
- 6) 아동영향평가 결과 :

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성북구 문화예술시설 기능 및 위치(제3조와 관련)

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기타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 2의 “성북전시관”을 “성북예술창작센터”로 하고, “아리랑아트홀”을 “미아리예술극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시 설 명	기 능	위 치
성북예술 창작센터	전시관	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23 (성북동1가 74-1)
미아리 예술극장	공연장, 세미나, 영화상영 등	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177 (돈암동 51-49외)
코아루센타시아 내 문화시설	전시장, 문화관, 체험관 등	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20나길 47 코아루센타시아 내 복층 (129호, 226호) (동선동1가 121-6)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 행	개    정    안
제6조(운영의 위탁) ①·② (생략) <u>&lt;신 설&gt;</u>	제6조(운영의 위탁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기타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</u>